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6월 27일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5월 14일, 소형준 의원 외 10명 발의

나. 회부일자: 2024. 5. 28.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6월 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소형준 의원)

가. 제안이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을 규정(안 제4조)
- 2)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5조)
-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 장려에 필요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6조)
- 4)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조항 마련(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 2) 예산조치: 예산 범위 내 필요시 조치
- 3)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 4) 입법예고: 2024. 5. 17. ~ 2024. 5. 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 요

- 본 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위기가구 발굴 노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제5조는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을 정하고, 위기가구 발굴 등 협력 대상자의 소요 경비 및 활동장려 물품 등의 지원을 명시함.
- 안 제6조~제7조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선정기준 및 포상대상을 규정하고,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정보 접근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포상 제외 규정을 마련함.
- 안 제8조는 제도 운영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여 관련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대한 지원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관협력과 지역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수원 세 모녀 사건 (' 22년 8월) ,서대문 신촌 모녀 사건 (' 22년 11월), 성남 모녀 사건 (' 23년 1월)처럼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의 어려운 생활상과 극단적인 선택이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됨.
-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¹⁾은 사회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을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과정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위기가구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책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8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6월 27일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5월 23일, 성북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2024. 5. 28. 회부
- 다. 상정일자: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6월 4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18길 6(월곡동)
- 규 모 : 576.58㎡(사무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2)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3) 위탁방법 :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4) 위탁사무의 범위 :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사업 등) 지원

- 지역사회활동(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등)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3. 관계법령 등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 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이하 “실버센터” 라 함)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4년 12월 31일자로 ‘실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현 수탁체인 일광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5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음.

상월곡 실버복지센터 현 위탁 현황

□ 시설개요

- (위탁기간/위탁기관) 5년('20.01.01.~'24.12.31) / (사단법인 일광복지재단 시설장 : 김경희)
- (소재지) 성북구 화랑로18길 6
- (시설규모) 연면적 576,58㎡ 지하1층/지상3층(1층 경로당 제외)
- (시설현황) 사무실, 다목적실, 휴게실, 2개 교육실 등
- (개관일) 2006.04.01.

□ 운영현황

- (종사자 현황) 사회복지사 4명
- (회원현황) 총 864명, 1일 이용인원 336명
- ('24년 예산) 309,137천원(전액구비)
- (운영실적)

(단위 : 개수)

구분	합 계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사회참여지원		건강지원		기타	
	1)프로 그램	2)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합 계	33	248	3	37	14	176	2	3	11	147	3	26

※ 프로그램 참여인원 : 8,811명

다. 민간위탁 및 재계약 근거

- ‘실버센터’ 운영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²⁾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1항³⁾에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⁴⁾에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구청장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추진은 가능하다고 사료 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 안 번 호	287
------------	-----

제출년월 : 2024년 6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립 상월곡실버복지센터
- 위 치 : 성북구 화랑로18길 6(월곡동)
- 규 모 : 576.58㎡(사무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나.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다. 위탁방법 :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사업 등) 지원
- 지역사회활동(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등)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3. 관계법령 등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6월 27일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5월 23일, 성북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2024. 5. 28. 회부
- 다. 상정일자: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6월 4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 사회참여활동 연계,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통합한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 위 치 : 성북구 한천로 708(장위동)
- 규 모 : 1,125.23㎡(전체 건물 연면적 1,641.73㎡에서 지상1층 제외)
 - 장위데이케어센터(2층) : 사무실, 간호실, 생활실, 물리치료실 등
 - 장위실버복지센터(3층) : 사무실, 강당, 교육실, 체력단련실 등

2)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3) 위탁방법 :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4) 위탁사무의 범위 :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사업 등) 지원
- 지역사회활동(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등)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재가 어르신 주·야간 보호서비스 제공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3. 관계법령 등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의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 8.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 요

- 본 동의안은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이하 “실버센터” 라 함)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4년 12월 31일자로 ‘실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현 수탁체인 다원문화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5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 현황은 아래와 같음.

장위실버복지센터 현 위탁 현황

□ 시설개요

- (위탁기간/위탁기관) 5년('20.01.01.~'24.12.31) / (사단법인 다원문화복지재단 이사장 : 유무숙)
- (소재지) 성북구 한천로 708 ○ (개관일) 2005.03.30.
- (시설규모) 3층(사용층) 면적 537.196㎡, 지하1층/지상3층
- (시설현황) 사무실, 인터넷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교육실 등

□ 운영현황

- (종사자 현황) 사회복지사 4명(센터장 : 김승현)
- (회원현황) 총 885명, 1일 이용인원 254명
- ('24년 예산) 326,158천원(전액구비)
- (운영실적)

(단위 : 개수)

구 분	합 계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지원		사회참여지원		건강지원		기타	
	1)프로 그램	2)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프로 그램	세부 과정
합 계	34	558	6	56	25	341	-	-	1	60	2	101

※ 프로그램 참여인원 : 8,207명(대면 5,259명, 비대면 2,948명)

장위데이케어센터 현 위탁 현황

□ 시설개요

- (위탁기간/위탁기관) 5년('20.01.01.~'24.12.31) / (사단법인 다원문화복지재단 이사장 : 유무숙)
- (소재지) 성북구 한천로 708 ○ (시설규모) 2층(사용층) 면적 539.46㎡,
- (시설현황)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세탁실 등
- (정원) 35명, ○ (개관일) 2020.07.21

□ 운영현황

- (종사자 현황) 14명(센터장 : 김승현)

합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원
14명	1명	2명	2명	6명	1명	1명	1명

- ('24년 예산) 62,900천원(전액시비)

(단위: 천원)

합 계	주간운영비	야간운영비	환경개선 및 복지지원	복지포인트
62,900	11,000	38,000	10,000	3,900

※ 2024년부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시설로 보조금 지원

다. 민간위탁 및 재계약 근거

- ‘실버센터’ 운영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⁵⁾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1항⁶⁾에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제2항⁷⁾에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구청장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추진은 가능하다고 사료 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 안 번 호	288
------------	-----

제출년월 : 2024년 6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복지, 사회참여활동 연계,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통합한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구립 장위실버복지센터 및 장위데이케어센터
- 위 치 : 성북구 한천로 708(장위동)
- 규 모 : 1,125.23㎡(전체 건물 연면적 1,641.73㎡에서 지상1층 제외)
 - 장위데이케어센터(2층) : 사무실, 간호실, 생활실, 물리치료실 등
 - 장위실버복지센터(3층) : 사무실, 강당, 교육실, 체력단련실 등

나. 위탁기간 : 2025. 1. 1. ~ 2029. 12. 31.(5년)

다. 위탁방법 :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상담, 사회교육, 기능회복사업 등) 지원
- 지역사회활동(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등)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재가 어르신 주·야간 보호서비스 제공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3. 관계법령 등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 8. 생략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6월 27일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5월 23일, 성북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4. 5. 28. 회부
다. 상정일자: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6월 4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우리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중인 월곡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024.8.31.)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종사자	소요예산 ('24년기준)	現)위탁기관
					협약기간
월곡청소년 센터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 (하월곡동)	1,463㎡ (지하1층~ 지상3층)	8명	586,181천원(계)	(사)한국청소년재단
				12,684천원(국) 573,497천원(구)	(관장:정진희) 21.9.1.~24.8.31.

2)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2024.9.1. ~ 2027.8.31.)
- 위탁사무 : 「월곡청소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따른 아동권리 보호 및 참여권 보장
 -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환경 개선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및 여가를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 성북구 지역특성을 활용한 “성북 특화 프로그램” 발굴·개발
 - 청소년카페, 동아리실등 청소년 휴식·활동을 공간 조성·운영
 - 지역 내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정보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그 밖에 성북형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3)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다.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별표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 요

- 본 동의안은 ‘월곡청소년센터’ (이하 “청소년센터” 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4년 8월 31일 자로 ‘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체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현황 및 운영실적은 아래와 같음.

월곡청소년센터 위탁 현황

□ 시설개요

- (위탁기간/위탁기관) 3년('21.09.01.~'24.08.31) / (사단법인 한국청소재단 관장 : 정진희)
- (소재지)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
- (시설규모) 부지 1,046㎡, 건물 1,464㎡

층별	연면적(㎡)	운영 시설
지상3층	383	팀플실(2), 소회의실, 활동실(2), 상담실(2), 지도자실
지상2층	383	대강당, 밴드실, 미디어실, 오픈스튜디오, Maker WG
지상1층	386	청소년아지트, 푸름, 운영위원회실, 통합사무실
지하1층	310	CAFE W, 활동실(1), 열린주방

□ 운영현황

- (종사자 현황) 8명
- ('24년 예산) 586,181천원(국비 12,684 / 시비 573,497)
- (주요사업) 7개 사업 13개 프로그램

< 운영실적 >

연도	구 분	청소년 목적사업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대관사업	기타	계
2024.4.	프로그램	10	1(24)	2	-	-	13(24)
	참여인원	8,345	2,456	359	88	-	11,248
2023	프로그램	13	1(48)	11	-	-	25(48)
	참여인원	34,440	5,658	9,431	739	-	50,268
2022	프로그램	21	2(39)	10	0	1	34
	참여인원	25,583	3,707	6,442	0	4,457	40,189

다. 민간위탁 및 재계약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⁸⁾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⁹⁾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청소년단체에 3년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 「민간위탁 조례」 제3항¹⁰⁾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추진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청소년센터”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실시한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평균 89.4점으로 준수한 편으로 위탁사무의 수행을 무리없이 수행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성과평가 결과>

연번	평가영역	배점	점수	연번	평가영역	배점	점수
1	운영 및 관리	10	8.82	5	시설기준 및 안전	19	18.8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6	15.4	6	대외협력 및 홍보	5	3.75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20	19.2	7	종합 평가	10	9.95
4	인사 및 조직	20	17	총점		100	89.4

또한, 2022년과 2023년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청소년정책활동 및 예술 활동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 8)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계약체결 등)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것으로 사료 됨.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290
----------	-----

제출년월일 : 2024. 6.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중인 월곡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024.8.31.)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위치	규모	종사자	소요예산 (24년기준)	現)위탁기관
					협약기간
월곡청소년 센터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 (하월곡동)	1,463㎡ (지하1층~ 지상3층)	8명	586,181천원(계)	(사)한국청소년재단 (관장:정진희)
				12,684천원(국) 573,497천원(구)	21.9.1.~24.8.31.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3년(2024.9.1. ~ 2027.8.31.)
- 위탁사무 : 「월곡청소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따른 아동권리 보호 및 참여권 보장

-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환경 개선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및 여가를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개발
- 성북구 지역특성을 활용한 “성북 특화 프로그램” 발굴·개발
- 청소년카페, 동아리실등 청소년 휴식·활동을 공간 조성·운영
- 지역 내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교육
-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정보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그 밖에 성북형 아동·청소년 문화공간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다.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등)

제117조(사무의 위임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별표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6월 27일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5월 23일, 성북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2024. 5. 28. 회부
- 다. 상정일자: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6월 4일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근거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강화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아동권리현황조사 신설(안 제6조)
- 2) 옴부즈퍼슨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강화 등 운영 체계 정비(안 제15조~제18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 3)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안 제26조~제34조)
- 4)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근거 규정(안 제35조~제43조)
- 5)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단체장 의무 구체화(안 제3조)
- 6) 기타 자구 수정 및 정비(안 제1조~제2조, 안 제8조, 안 제18조~제19조)
- 7) 부칙정비(부칙 안 제1조~제5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기 타

가)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8. ~ 2024. 5. 8. (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반영)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내용
입법 예고	아동·청소년의회 용어 대신 어린이·청소년의회 용어 사용 및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의 명확화	반영	아동·청소년의회 용어를 어린이·청소년의회로 표기 하고,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9호, 제10호)
	아동, 청소년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반영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정의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제2호, 제8호)

나)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반영)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구분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내용
부 패 영 향 평 가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	반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 요

- 본 전부개정안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마련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의회 용어를 어린이·청소년의회로 표기하고,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 발굴·추진, 재정 지원사항을 명시하는 등 기존 보다 구체화함.
- 안 제6조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아동의 참여와 존중 등 아동권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도록 아동권리현황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5조~제23조까지는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옴부즈퍼슨¹¹⁾을 기존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안 제21조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기존 17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확대하고 연 1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로 강화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함.
- 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참여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연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에 반영하도록 아동 참여에 대한 구체적 실행 규정을 명시함.
- 안 제35조~제42조까지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설치 및 기능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부칙은 조례안 제35조~제42조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등 경과조치 규정을 통하여 개정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고,
- 그 밖에 개정사항은 어법에 맞게 자구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임.

다.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을 위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 아동의 권리 보호·증진 및 피해구제 기능 수행을 위한 옴부즈퍼슨 확대,

11)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사수하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옹호자로서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강화 등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이념을 반영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과 권리를 존중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안 제35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에 대한 약칭을 “어린이·청소년의회”로 두고 있으므로, 안 제40조 및 제42조 조문 중 “의회”를 “어린이·청년회의회”로 수정하고,
- 부칙 안 제2조 조문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 됨.

<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제40조(사무국의 설치) <u>의회</u>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0조(사무국의 설치) <u>어린이·청소년의회</u>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2조(의견반영) 구청장은 <u>의회</u> 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여 성북구 의회 및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의견반영) 구청장은 <u>어린이·청소년의회</u> 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여 성북구 의회 및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u>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는 폐지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u>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는 폐지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제35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에 대한 약칭을 “어린이·청소년의회”로 두고 있으므로, 약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
- 안 제42조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 안 부칙 제2조 중 조례명을 제명에 맞도록 수정

나. 수정 내용

- 안 제40조 중 “의회”를 “어린이·청소년의회”로 수정
- 안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회에서”를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로 수정, 같은 조 제2항에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를 신설
- 안 부칙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9
----------	--------

제안연월일: 2024. 6.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5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에 대한 약칭을 “어린이·청소년의회”로 두고 있으므로, 약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
- 안 제42조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 안 부칙 제2조 중 조례명을 제명에 맞도록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40조 중 “의회”를 “어린이·청소년의회”로 수정
- 안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회에서”를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로 수정, 같은 조 제2항에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를 신설
- 안 부칙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0조 중 “의회”를 “어린이·청소년의회”로 한다.

안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회”를 “어린이·청소년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안	수 정 안
제40조(사무국의 설치) <u>의회</u>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0조(사무국의 설치) <u>어린이·청소년의회</u> ----- -----.
제42조(의견반영) 구청장은 <u>의회</u> 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여 성북구 의회 및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2조(의견반영) ① ---- <u>어린이·청소년의회</u> ----- -----. ② 구청장은 <u>어린이·청소년의회</u> 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u>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u>
부 칙	부 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 <u>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는 폐지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 「 <u>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놀이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7. “음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8.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청소년”은 이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어린이의회”란 10세에서 12세까지의 어린이거나, 초등학교 4~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10. “청소년의회”란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이거나,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1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실현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

력해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 및 정책 방향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권리현황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아동권리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참여와 존중 · 놀이와 문화 · 교육환경 · 가정생활
2. 아동을 위한 안전과 보호 · 보건복지 서비스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현황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영향평가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규칙,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실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정책은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③ 구청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

전한 다음 각 호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참여)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평가, 권리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구청장이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아동권리지킴이의 활동결과 등을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옴부즈퍼슨)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한다.

②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권리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의 아동친화 관련 사항

④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부즈퍼슨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권리현황조사와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다양한 계층·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

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25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제26조(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이

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3.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아동·청소년 참여기구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구성) ①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아동·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발하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을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청소년
2. 다문화, 장애, 북한이탈주민 등 소수 아동·청소년

④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의 거주지 또는 학교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되어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지원 등)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참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견학 등 프로그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33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

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어린이·청소년의회

제35조(어린이·청소년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의사활동 체험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 “어린이·청소년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 정책, 사업, 입법 제안
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6조(구성) ①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어린이·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수는 각각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발하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청소년을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
2. 다문화, 장애, 북한이탈주민 등 소수 어린이·청소년

④ 어린이·청소년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단을 구성하며,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2(의장단)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의3(상임위원회) ① 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명칭은 의회의 전체회의를 통하여 정하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④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임기)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장소는 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의원의 해촉) 구청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의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의원의 거주지 또는 학교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되어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사무국의 설치)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1조(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어린이·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견학 등 프로그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2조(의견반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청취

하여 성북구 의회 및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반영 또는 미반영 이유를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방법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4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규정 등의 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어린이·청소년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는 이 조례 제2조의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은 이 조례 제36조의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 때에는 이 조례 제40조의 사무국으로 본다.

제5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어린

이·청소년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6월 27일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5월 23일, 성북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2024. 5. 28. 회부
- 다. 상정일자: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6월 4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교육청-자치구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자치구의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출범 및 ‘서울특별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시행 등 관련 기관별로 교육협력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특정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미래교육 체계 구축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2) 조례의 목적과 ‘미래교육’, ‘미래교육지구 사업’, ‘교육협력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3)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사업계획의 수립,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 4) 미래교육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2조)
- 5) 미래교육 사업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해당법령 없음
-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3)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 4) 기타

가)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4. 18. ~ 2024. 5. 8. (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나)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사항 반영(안 제10조제5항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규정 신설)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라) 법제심사 결과 : 이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 요

- 본 전부개정안은 2015년에 시작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이 2022년 12월에 종료되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연계 교육협력사업인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2023년 5월에 새롭게 출범됨에 따라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중 ‘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변경하고 ‘미래교육지구’ 등 사업 관련 용어를 재정의함.
- 안 제3조는 지역자원연계 교육과정 지원, 성북구 교육 특화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시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함.
- 안 제5조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미래교육의 정책 제언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미래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 및 기업 등과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종료 및 미래교육지구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의 명칭 및 운영협의회 구성 등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미래

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다만,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운영협의회 구성 대상자를 ‘어린이·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나,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수혜 대상이 ‘학생’이므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 됨.

<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운영협의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이하 생략)	제7조(운영협의회)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이하 생략)
3. <u>어린이·청소년</u> , 학부모 또는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3. <u>학생</u> , 학부모 또는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운영협의회 구성 대상자를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수혜 대상인 “학생” 으로 수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미래교육 운영협의회 기능을 고려했을 때, 안 제12조에 규정된 여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수당 등” 으로 수정하여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명시함

나. 수정 내용

-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운영협의회 구성 대상자를 “어린이·청소년”에서 “학생”으로 수정
- 안 제12조 중 “참석수당, 여비, 활동비 등”을 “수당 등”으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1
----------	--------

제안연월일: 2024. 6.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운영협의회 구성 대상자를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수혜 대상인 “학생” 으로 수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미래교육 운영협의회 기능을 고려했을 때, 안 제12조에 규정된 여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수당 등” 으로 수정하여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명시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운영협의회 구성 대상자를 “어린이·청소년” 에서 “학생” 으로 수정
- 안 제12조 중 “참석수당, 여비, 활동비 등” 을 “수당 등” 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제3호 중 “어린이·청소년”을 “학생”으로 한다.

안 제12조 전단 중 “참석수당, 여비, 활동비”를 “수당”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illegible]

제12조(수당 등) 운영협의회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u>참석수당, 여비, 활동비</u>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 ----- <u>수당</u> ----- -----.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 각급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이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성북구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지원 협력사업”이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관내 각급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성북구 교육 특화 사업
3. 그 밖에 미래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미래교육 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교육지원 협력사업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래교육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미래교육 사업의 정책 제안
2. 미래교육 사업의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 사업 운영을 위한 지역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미래교육 업무 소관 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 소재 기관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장 및 교원 6명 이내
 3. 학생, 학부모 또는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4. 그 밖에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업무 소관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궐위 또는 사퇴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운영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운영협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수당 등) 운영협회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대외협력)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6월 27일 (목)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5월 23일, 성북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2024. 5. 28. 회부
- 다. 상정일자: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6월 4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용인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성북구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2)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
- 3)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4)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8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2) 예산조치 : 2024년 예산 499,080천원 기반영
-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 기 타

가)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4. 4. 18. ~ 5. 8.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마) 법제심사 결과 : 이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 요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본 제정안은 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초·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의류, 도서, 안경, 전자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임. 성북구 입학준비금 연도별 지원실적과 2024년도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분담액은 아래와 같음.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지원대상	학생수	총 지원액	분담액			비고
				교육청	서울시	성북구	
2023년	초·중·고	9,028	2,400,100	1,138,390	720,030	541,680	
2022년	초·중·고	9,077	2,391,800	1,129,640	717,540	544,620	
2021년	중·고	6,414	1,953,005	976,503	585,901	390,601	

<2024년도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및 분담액>

(단위 : 천원)

구분	학생수 (명)	1인당 지원액	총 지원액	교육청		서울시		성북구	
				분담비율	분담액	분담비율	분담액	분담비율	분담액
초	2,644	20만원	528,800	40%	211,520	30%	158,640	30%	158,640
중·고	5,674	30만원	1,702,200	50%	851,100	30%	510,660	20%	340,440
계	8,318		2,231,000		1,062,620		669,300		499,080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학교 및 입학준비금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와 제4조는 입학준비금의 지원 및 대상을 우리 구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등으로 규정함.
- 안 제5조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입학준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복 지원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는 지원대상, 금액,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합의하여 추진하는 교육복지사업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의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 됨.
- 다만, 안 제4조제2호 조문 중 제1호는 ‘지원대상인 학생’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학교’를 지칭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지원대상을 구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을 지칭하고자 하였으나, 안 제4조제2호 조문에서 말하는 제1호는 ‘지원대상인 학생’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학교’를 지칭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내용

- 안 제4조제2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구 소재 학교”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2
----------	--------

제안연월일: 2024. 6.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원대상을 구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을 지칭하고자 하였으나, 안 제4조제2호 조문에서 말하는 제1호는 ‘지원대상인 학생’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학교’를 지칭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구 소재 학교”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구 소재 학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u>제1호</u> 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 <u>구 소재</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입학생이 소속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학교명		학년 반 (미배정시 공란)	1학년 반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예금주)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입학준비금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중복지원여부	지원 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금액	원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구청장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준비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시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 한함)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